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 설명

- ☐ 존경하는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더불어민주당 금천 제2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최기찬의원입니다.
- ☐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☐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☐ 현재 건축법령에서는 건축협정 체결자 중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, 서울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았습니다.
- ☐ 그런데 모아타운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건축협정을 통해 통합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*가 건축협정을 체결하

고 있습니다.

☐ 이에 본 위원은, 조례 개정을 통해

건축협정 체결지역 및 체결자 범위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및 시행자를 구체적 명시하여 건축협정 체결에 대한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
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